

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

의안 번호	118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특별시에 2015.08.14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신청된

(가칭)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현재 하천무단점용 상태인

동부간선도로에 대한 적법화 이행 및 중랑천을 친수공간으로

조성하여 서울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, 동부간선도로

확장(6→8차로)을 통해 상습 지·정체 해소와 서울 동부의

남북을 연결하는 새로운 주간선도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임.

나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((KDI

PIMAC)의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결과 민간제안사업의 타당성이

인정되어 「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」 제7조

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거쳐 이를 민간투자사업으로

추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□ 그간의 추진현황

- '15.08.18 :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(가칭) 동서울지하도로(주)
- '16.12.23 : 민자적격성 의뢰 (서울시 → PIMAC)
- '17.02.20 : 시의회 보고 (서울시 조례 제14조 4호)
- '18.06.01 : '18년 국가교통DB 배포
- '18.07.24 : 민자사업 변경제안서 접수 (가칭) 동서울지하도로(주)
- '18.07.27 :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재의뢰 (서울시 → PIMAC)
- '19.07.24 : 정책성(AHP) 평가회의 완료
- '19.07.31 : 최종 점검회의 및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(B/C 1.01)
- '19.09.05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완료
- '19.08.~10.: 제3자제안공고(안) 작성 및 검토
 - 계약심사단(09.20),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(09.25), PIMAC(10.01) 검토완료

□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

가. 제안자 : (가칭)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

출자자	(주)대우건설	KDB인프라자산운용(주)
지분율	30.0%	70.0%

나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
- 구간 : 강남구 청담동 (영동대로) ~ 성북구 석관동 (북부간선도로)
- 시설규모 : 연장 10.4km, 폭 9.5m (양방향 4차로, 소형차 전용)
- 총사업비 : 9,454억원 (민간자본 6,112, 건설보조 3,342)
 - ※ '15년 4월 1일 불변가격 기준, 총사업비 대비 재정지원 비율 35.4%
- 추진방식 : BTO방식
 - (준공과 동시 소유권은 시에 귀속, 운영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인정)
- 공사기간 : 착수일로부터 60개월
- 운영기간 :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

다. 자원조달 계획

(단위: 억원)

구 분	변경제안('18.07.24)	
	총사업비('15.4 불변기준)	총투자비
계	9,454	11,780
민간자본	6,112	7,840
건설보조	3,342	3,940

※ 보상비 제외, 물가인상(2%) 및 건설이자 포함

라. 지원 요구사항

○ 재정적 지원

- 건설보조금 지원 : 3,342억원 ('15.4월 불변가격 기준)
- 보상비의 지원 요청

○ 비재정적 지원

- 경쟁도로 건설 지양
-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
- 사회기반시설 취득세 비과세 적용 요구
- 미납차량에 대한 요금 징수 협조
- 각종 세제지원 요구 (부가가치세 영세율 등)
- 보상업무의 적기 시행

마. 사업성 분석

구 분	항 목	금 액(백만원)	비 고
유 출	1. 건설비용	611,173	○ 목표수익률(실질): 5.37% ○ 적용통행료 : 2,600원 (소형기준)
	2. 운영비용	370,050	
	계('15불변가)	981,223	
	현재가치	484,046	
유 입	1. 운영수입	1,689,012	○ 사업추진방식 : BT0 ○ 물가상승률 : 2%
	2. 재정지원	334,183	
	계('15불변가)	2,023,195	
	현재가치	484,046	

※ 사업제안서 기준(2015. 4. 1 불변가)

□ 공공투자관리센터(PIMAC) 적격성조사 결과 ('19.07.31)

가. 근거

-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
나. 검토의견

- 사업제안서는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형식적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.
- 경제성 분석결과

구 분	적격성조사	비 고
총할인편익(백만원)	1,003,278	
총할인비용(백만원)	1,014,477	
B/C ¹⁾	1.01	
NPV(백만원) ²⁾	11,200	
IRR(%) ³⁾	4.6	

- AHP 평가결과 : 사업 타당성 있음 (AHP 평점 0.563)

평가자	사업시행	비고	평가자	사업시행	비고
종합	0.563				
평가자 1	0.514		평가자 5	0.585	
평가자 2	0.581		평가자 6	0.550	
평가자 3	0.549		평가자 7	0.530	
평가자 4	0.592		평가자 8	0.577	

- 경제성 분석, 정책성 분석, 지역균형발전분석을 종합한 AHP 분석결과 평점이 0.563로 평가되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지침 기준(0.5 이상)을 만족하여 종합적 타당성이 있음.

1) 편익/비용(B/C) :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로 1.0이상이면 경제성이 있음
 2) 순현재가치(NPV) : 총 편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값으로 0이상이면 경제성이 있음
 3) 내부수익률(IRR) :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아지도록 하는 할인율로, 사회적할인율(4.5%)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음

○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(정량적 VFM 분석)

- VFM 분석결과, 정부실행대안(PSC)의 정부부담금 규모가 민간투자 대안(PFI) 정부부담금 규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, 재정사업으로 추진 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함.

정부부담금(백만원)		VFM ⁴⁾ 금액 (A - B, 백만원)	VFM 비율 (A-B) / A (%)
재정사업(A)	민자사업(B)		
365,608	342,484	23,123	6.32

○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비율 산정

- 1.0%를 제시하고자 하나, 주무관청이 최종적인 우대점수비율을 결정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.

다. 종합결론

○ 타당성 판단에서는

- 수요 및 편익, 비용 추정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함께 고려하였음. 경제성분석 결과 B/C 비율이 1.01로 도출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였고,

○ 정책적 분석 결과에서는

- 정책방향과의 일치성, 사업의 추진의지 및 선호도, 고용효과분석 부분에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존재하며,
- 상기 경제성 분석, 정책성 분석,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한 결과 사업 시행 평점이 0.563로 산정되어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것으로 평가됨.

4) VFM(Value for Money) : 정부실행대안(PSC1)과 민간투자대안(PFI1)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을 현재가치화하여 두 대안의 정부부담금을 비교하는 것으로 $VFM \geq 0$ 이면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

- 또한,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한 지 평가하는 적격성(VfM) 분석을 수행한 결과,
 - VfM 금액은 231.23억원, VfM 비율은 6.32%로 도출되어 VfM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됨.
- 따라서,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분석 결과,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남.

□ 향후 추진방향

- 현재 하천무단점용 상태인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적법화 이행 및 중랑천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서울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, 동부간선도로의 상습 지·정체 해소와 서울 동부의 남북을 연결하는 새로운 주간선도로를 확보를 위한 우리시 도로기본 정책방향에 부합됨.
- 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”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 노선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조사 결과를 제3자 제안공고에 반영하여,
- 우리시가 목적하는 동북부지역의 간선도로망의 순환체계를 강화하고 시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코자 함.

□ 향후 추진일정

- 2019.12. : 제3자 제안공고
- 2020.04. :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
- 2021.06. : 실시 협약체결 및 설계시행
- 2021.12. :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-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
-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(기획재정부)

나. 예산조치 : 2021년 이후 예산편성 추진 (설계보상비 등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김상익(☎ 2133-8065)

□ 위치 도

